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6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이춘석·정준호·김윤덕

서미화 • 이연희 • 윤준병

김성환 • 이원택 • 위성곤

강유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및제1호의5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4.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의5. 재직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3
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	
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	
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	
하여야 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4.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u><신 설></u>	1의5. 재직 중에 미성년자에 대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받은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2.・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

2.·3. (생략)④·⑤ (생략)